# 총신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 전 문

본 총신대학교는 민족 신학대학교로서 1901 년 설립된 평양신학교의 전통을 수호하며 칼빈주의적 개혁 신학에 입각한 대학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역사와 민족 현실의 질곡 속에서 이 땅의 열망인 자주화, 민주화, 그리고 민족통일을 향한 민족사의 전진적 푯대를 제시하여야 할 역사적 소명을 갖는다.

이에 역사와 사회에 대하여 주체자로서 부름 받은 총신인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대명제 아래 민족 선교와 세계선교의 주도적 실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공의 하에 끊임없이 실천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 총신인은 그 선결조건으로 자율성 확립이 필연적 과제임을 절감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총학생회 부활과 함께 1985 년도에 마련된 총신대학교 총학생회 회칙을 1988 년 5월 9일 1차 개정하였으며 1991년 4월 19일 모든 총신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2차 개정하고, 2012년 11월 15일에 3차 개정하였으며, 2018년 11월 20일에 모든 회원의 의사에 의하여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4차 개정하는 바이다.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총신대학교 총학생회라 칭한다.(이하 <본회>)

제2조 (목적) 본회는 개혁주의적 성경관을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올바른 대학 문화 건설과 회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여 총신대학교의 발전을 꾀하며 정의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는 총신대학교 안에 둔다.

제4조 (운영) 본회는 회원에 의하여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원칙하에 본회의 회칙에 의해 운영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상태에 있는 자와 징계 처분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제1항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며,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 제2항 회원은 본 회의 사업계획, 재정, 운영전반에 관하여 회원 전체의 이해관계를 심각히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 권리를 갖는다.
- 제3항 본회의 회원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 제4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으로 인하여 학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벌이나 불이익, 처벌 징계를 받지 않는다.
- 제5항 본회의 회원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를 가진다.
- 제6항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7항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 및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와 본회 회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았을 경우 학생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

제9항 회원의 기타 활동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학교당국의 관계위원회 참석 발언권) 학생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학교당국의 회의에 총학생회장이 학생을 대표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한 경우 해당 학생도 자기를 위하여 변론할 수 있다.

제8조 (자문 및 협의) 본회는 필요한 경우 총장, 각 과 학과장 및 교수와 협의 할 수 있으며 자치활동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구성)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대의원총회, 상임위원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운영위원회, 집행부, 각 과 학생회, 총여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동아리연합회, 기타 회칙이 정하는 산하기구 및 위원회로 구성한다.

## 제2장 학생총회

제10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 반영 결정 기구이다.

제11조 (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 제12조 (권한)

제1항 학생총회는 학생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제2항 매 학기 총학생회의 예·결산 및 사업을 보고 받는다.

제3항 학칙 개정과 회칙 개정에 대한 토의와 발의를 한다.

제4항 회칙개정안을 확정, 의결한다. 단 그 절차와 시기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항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대의원총회 의장의 불신임 요구권을 갖는다. 단 정·부총학생회장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투표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으며, 불신임투표의 제반 사항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 (소집 및 의석배정)

제1항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제2항 정기회는 매 학기 개강 후 31일 이내에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제3항 임시회는 총학생회장, 대의원총회, 운영위원 1/2 이상, 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제4항 총학생회장이 소집을 거부할 때는 대의원총회의 심의를 통해 재소집 요구가 가능하며 이때에는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 (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겸임한다.

**제15조**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제1항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 개회 3일 전까지 최종 회원 명부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2항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1/6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발의된 의안은 출석 회원 2/3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세칙) 기타 학생총회의 소집, 진행, 의결 등의 사항은 총신대학교 총학생회 의사진행세칙에 의한다.

### 제3장 대의원총회

제17조 (지위) 대의원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 **제18조** (구성)

제1항 대의원총회는 본회의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대의원은 본교 전체 학과의 각 학년별 1 인으로 한다. 단, 1 개 학년의 재학 인원이 60 인을 초과할 경우에 1 인을 추가로 선출한다.

제3항 상임위원은 대의원 의장이 임명하여 각 학과의 대의원회를 대표, 주관한다.

제4항 최종등록기간 중 등록을 하지 않을 시에는 대의원 자격이 박탈된다.

제5항 대의원은 총학생회의 집행부나 운영위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 **제19조** (의장 및 부의장)

제1항 대의원 의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되어 대의원총회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제2항 의장은 대의원총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한다.

제3항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궐위 시에는 그 직을 계승하여 해당 기간 동안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4항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항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궐위, 탄핵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항 의장은 대의원총회 내의 각 부서의 국장 임명권을 갖는다.

제20조 (업무 및 권한) 대의원총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제1항 학칙개정 건의권.

제2항 회칙개정 건의 및 의결권.

제3항 회칙 개정안 체계 및 자구에 대한 심사.

제4항 학생총회 소집과 재소집 요구권.

제5항 학생경비 심의 의결권.

제6항 총학생회 사업계획 보고의 심의 및 인준권.

제7항 총학생회 예·결산 심의 및 인준권.

제8항 대의원총회 의장단 선출권.

제9항 대의원총회 의장단 탄핵 결의권.

제10항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불신임투표 결의권.

제11항 집행부 각 부장의 인준 및 해임 의결권.

제12항 총학생회장이 발의한 집행부 부서 인준 및 해체 의결권

제13항 대의원총회 각 부장의 인준 및 해임 의결권.

제14항 신규 자치 단체의 승인.

제15항 운영위원, 총학생회장, 집행부 부장의 출석 및 서면 답변 요구권.

제16항 감사결과 부정 발견 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한 학교당국의 징계 요구권.

제17항 총학생회와 학교당국에 대한 본교 학생들의 의견수렴 및 사업 실시 요구권.

제18항 업무수행 시 필요한 학교 당국자의 출석 요구권 및 서면답변 요구권.

제19항 학교당국의 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권.

제20항 기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21조 (소집) 대의원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제1항 정기회(예·결산 감사)는 대의원총회 의장이 매 학기 개강 일주일 후와 종강 일주일 전에 소집한다. 이 때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총학생회 운영위원들의 전원 참석 하에 진행한다.

제2항 임시회는 재적 대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총학생회장, 대의원총회 의장의 요구가 있을 시소집한다.

제3항 대의원총회 소집은 3일 전에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 제22조 (의결 정족수)

제1항 대의원총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2항 대의원 3 인 이상의 동의로 의안을 발의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장 상임 위원회

#### 제23조 (지위)

제1항 대의원총회에 상임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둔다.

제2항 상임위원회는 본회 최고 의안 심사기구이다.

제24조 (구성) 상임위원회는 대의원총회 의장과 의장이 임명한 각 학과 대의원회의 대표 1 인으로 구성한다.

제25조 (위원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대의원총회 의장이 겸임한다.

#### 제26조 (업무 및 권한)

제1항 대의원총회에서 회부된 청원, 감사, 탄핵 의결, 기타 심사를 요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제2항 본회의 경리 서무 및 기타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를 주관한다.

제3항 의결, 심사, 감사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제4항 집행부 각 부장의 인준 및 해임 의결권을 가진다.

제5항 대의원 총회 각 부장의 인준 및 해임 의결권을 가진다.

제6항 회칙이 정하는 상설 및 임시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학생복지위원 및 위원장의 인준권을 가진다.

제7항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권을 가진다.

제8항 대의원총회 소집 요구권을 가진다.

제9항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총학생회장이 요구하는 특별위원회를 승인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때 해당 위원회는 임무 완료 시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체할 수 있다.

제10항 선거관리위원이 되며 각 과와 기구, 총학생회장의 선거를 관리한다.

제11항 대의원총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제12항 의결정족수 미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대의원총회의 미결 안건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13항 재적 상임위원 전원의 동의로 긴급 시 대의원총회의 모든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4항 필요한 경우 임시 집행 부서를 설치하고 승인할 권한을 갖는다.

제27조 (소집) 상임위원회는 총학생회장, 상임위원장, 재적의원 2/3 이상의 요구로 상임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8조 (의결)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장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 제29조 (지위)

- 제1항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학생총회 의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집행부의 부장이되다
- 제2항 총학생회장은 본회 활동과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 회의에 학생을 대표하여 참석하며 발언할 수 있다.
- 제3항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의 궐위 시에는 그 직을 계승하여 잔여 임기 동안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 제4항 대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하여 각계각층과 연대활동을 관장한다.
- 제5항 정·부총학생회장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투표의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위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30조** (임기)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12 월 1 일부터 다음 년도 11 월 30 일까지로 한다. 단, 비상특별위원회 발족 시 총학생회장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이 당선될 때까지 연장된다.

제31조 (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제1항 본회 회원의 자유로운 학습활동과 학생 활동을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2항 대외적으로 총학생회를 대표하며 각계·각층과 연대 활동을 관장한다.
- 제3항 집행부의 각 부장을 구성하여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거쳐 이를 임명한다.
- 제4항 본회의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집행부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관한다.
- 제5항 본회의 전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 제출한다.
- 제6항 대의원총회와 상임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항 본회 회원을 대표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학교행정에 대하여 학교 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8항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학교 당국에 제시할 수 있다.
- 제9항 대의원총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 제10항 대의원총회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1항 본회의 회칙 개정에 대하여 발의할 수 있으며 대의원총회에서 개정된 회칙과 전면 개정 시 학생투표를 통해 개정된 회칙도 3일 이내에 공포한다.

제12항 거교적인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총학생회장 직속으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 기구를 둘 수 있으며, 임무 완료 시 총학생회장의 결정으로 해체한다.

제13항 운영위원회와 집행부 감독권을 가진다.

제14항 대의원총회의 부결 사항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항 졸업준비위원회의 감독권을 가진다.

#### 제6장 운영위원회

제32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33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정·부총학생회장, 집행부 대표 1 인, 각 과 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장, 학생복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34조** (위원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부위원장은 부총학생회장 및 집행부 대표를 제외한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1 인을 선출한다.

제35조 (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제1항 총학생회비를 책정하여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제2항 총학생회의 제반 사업을 검토 조정하여 대의원총회에 제출한다.

제3항 총학생회의 전체 예산을 검토 조정하여 대의원총회에 제출한다.

제4항 결산보고서를 검토하여 대의원총회에 제출한다.

제5항 대의원총회 의장, 부의장 불신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항 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총학생회장에게 건의한다.

제7항 운영위원 1/2 이상의 요구로 학생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8항 집행부 각 국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9항 집행부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 심의 조정한다.

제10항 가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제11항 단 1 회에 한하여 대의원총회의 예산 사업 심의 및 집행부 부장 해임 의결에 대한 재심의 요구권을 갖는다.

제12항 회칙개정안을 발의하여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제13항 본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4항 학생 자치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학교 행정에 관한 발의권을 갖는다.

제15항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운영에 대한 부분을 의결한다.

제36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항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주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항 임시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제37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장 집행부

제38조 (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39조 (구성) 집행부는 정·부총학생회장과 대의원총회 혹은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각 국 국장으로 구성한다.

제1항 각 국 국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부원을 둘 수 있다.

제2항 각 국장은 각 학회의 임원들과 연합하여 활동할 수 있다.

#### 제40조 (업무 및 권한)

제1항 집행부는 총학생회장의 동의 하에 소관업무를 집행한다.

제2항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집행한다.

제3항 집행부 국장은 대의원총회,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요구 시 출석하여 발언하여야 한다.

제4항 집행부는 제반 활동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호 사무국: 집행부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진행하며, 행정 및 행사진행을 담당한다.

2호 정책국: 대·내외적인 정책을 집행하며, 총학생회 이하 기관의 시스템 구축 작업을 한다.

3호 홍보국: 대·내외적인 홍보를 기획, 담당한다.

4호 재정국: 경리 및 회계를 담당한다.

5호 영성국: 각종 예배와 선교에 관한 대·내외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6호 졸업준비위원회: 4 학년 학우들의 졸업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5항 단 전항 이외의 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의 발의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추가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6항 사업계획안, 사업보고서, 예산편성과 사업 평가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총회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항 졸업준비위원회는 집행부 산하 집단이다.

#### 제8장 각 과 학생회

제41조 (지위) 각 과 학생회는 각 과의 최고 학생기구이다.

제42조 (구성) 각 과 학생회는 해당 과의 학생 전체로 구성한다.

제43조 (회장) 각 과 학생회장은 해당 과 학생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이 된다.

제44조 (업무 및 권한) 각 과 학생회는 자치 및 학술활동을 수행한다.

제45조 (회칙) 각 과 학생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과 학생회칙에 정한다.

**제46조** (재정) 재정은 학회비와 지원금, 기타 수익금 및 회비로 한다. 이는 각과 대의원회의 동의 하에 집행한다.

### 제9장 총여학생회

- 제47조 (구성) 총여학생회는 본교 여학생 전체로 구성한다.
- 제48조 (회장) 총여학생회장은 총여학생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이 된다.
- 제49조 (업무 및 권한) 총여학생회는 여학생들의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제50조 (회칙) 총여학생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여학생회칙에 정한다.
- **제51조** (재정) 재정은 총학생회비와 지원금 기타수익금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대의원총회의 인준 하에 특별회비의 징수가 가능하며 이 재정들은 대의원총회의 동의 하에 집행이 가능하다.

### 제10장 동아리 연합회

- 제52조 (구성) 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 연합회에 등록된 모든 동아리들로 구성한다.
- 제53조 (회장) 동아리 연합회 회장은 동아리 연합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이 된다.
- 제54조 (업무 및 권한) 동아리 연합회는 각 동아리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제55조 (회칙) 동아리 연합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아리 연합회 회칙에 정한다.
- **제56조** (재정) 재정은 총학생회비, 지원금, 기타 수익금, 동아리 등록금으로 하며 집행은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제11장 학생복지 위원회

- **제57조** (구성) 학생복지위원회는 각 과 학생회장의 추천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인준된 6 인으로 구성되며 지도교수 1 인을 둔다.
- **제58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은 학생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학생 복지를 담당하며 운영위원이 된다.
- 제59조 (업무 및 권한) 학생복지위원회는 학생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제60조 (임기)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년도 11월 말까지로 한다.
- 제61조 (회칙) 학생복지위원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생복지위원회 회칙에 정한다.
- 제62조 (재정) 재정은 자체수익금과 지원금으로 하며, 대의원총회의 인준 하에 동의를 얻어 집행한다.

## 제12장 특별 기구 및 위원회

제63조 (설치와 구성)

제1항 본회는 특수성을 지닌 사업 혹은 사안 등에 대한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 기구 혹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특별 기구 및 위원회의 형태는 상설 혹은 임시 위원회, TF 팀, 대책위원회, 신규 자치단체로 한다.

제3항 축제준비위원회, 새터준비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는 상설 위원회로 둔다.

제64조 (위원장) 각 특별 기구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 시행 세칙에 따른다.

#### **제65조** (업무 및 권한)

제1항 축제준비위원회는 축제의 준비, 개최, 진행,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2항 새터준비위원회는 신입생 새내기 배움터의 준비, 개최, 진행,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3항 졸업준비위원회는 졸업식 및 기타 관련 사항의 준비, 개최, 진 행, 운영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4항 전항에 속하지 않은 임시적인 특별 기구 및 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활동 기간은 해당 조직의 설치 시 정하며, 요청한 주체의 발의와 대의원총회 혹은 상임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한다.

제66조 (세칙) 각 특별 기구 및 위원회의 운영, 업무, 권한 등의 사항은 각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67조** (재정) 각 특별기구 및 위원회의 재정은 학생 경비, 지원금, 후원금과 그 이자로 하며, 대의원총회의 인준 하에 집행한다.

#### 제13장 재정

#### **제68조** (재정)

제1항 본회의 재정은 총학생회비(학생경비)와 그 이자, 지원금으로 한다.

제2항 본회의 재정은 본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6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2 월 1 일부터 다음 년도 11 월 말까지의 1 년으로 한다. (총학생회의 임기와 동일)

## 제70조 (예산 및 결산)

제1항 학생회비 징수는 학교 당국에 위임하고 예산은 집행부 및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뒤 대의원총회 의장의 인준에 의해 행한다.

제2항 예·결산안을 받은 대의원총회는 5일 이내에 심의 및 승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3항 예산수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과된 예산에 가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항 부득이하여 회칙이 정한 기간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혹은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잔여 이월금에 한정해서 가예산을 인정할 수 있다. 단, 예·결산안 미인준으로 인한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 제14장 선거

제71조 (선거권) 선거권은 본회의 재학생으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72조 (선거 방법)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로 한다.

제73조 (선거 시기) 총학생회장단, 각 기구 및 학회장 그리고 각 과 대의원 등의 선거는 임기만료 10 일이전에 실시한다. 단, 1 학년 대의원은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선출한다.

#### **제74조** (임기)

제1항 총학생회 내 모든 임원의 임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년도 11월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제2항 대의원총회 의장단의 임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년도 6월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 제75조 (총학생회장단의 선거)

제1항 총학생회장단 후보는 정·부총학생회장 후보자가 2 인 1 조가 되어 선거의 전 과정에 하나로서 참여한다.

제2항 (피선거권) 선거권을 갖고 학업에 충실하며 활동에 대한 열성을 가진 자로서 다음의 각 호를 충족한 회원으로 한다.

1호 5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평점 2.5 이상이며 3 학년인 자.

2호 본교에서 4학기 이상의 학업을 이수한 자

3호 회원 50 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제3항 대의원은 그 직을 사퇴하고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입후보할 수 없다.

제4항 선거 사무에 관계 있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제5항 (당선) 선거는 총학생회원 전원의 직접선거에 의하며 전체 유권자의 60% 이상의 투표율에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독 후보일 때는 60% 이상의 투표율에 총 투표자 수의 60%의 지지율로 당선이 확정된다.

### 제76조 (대의원총회 의장단 선거)

제1항 (피선거권) 5 학기이상 등록한 대의원 중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2항 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한다.

제3항 2 항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2 차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77조** (각 기구장 선거) 학생복지위원장, 동아리 연합회장, 대의원총회 의장을 제외한 기구장 선거는 다음 각 항을 따른다.

### 제1항 (피선거권)

1호 4 학기이상 등록을 필하고 평점 2.5 이상인 자.

2호 회원 50 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호 집행부 임원, 각 과 학생회 임원, 대의원은 이것을 겸직 할 수 없다.

제2항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한다.

## 제78조 (각 과 학생회장 선거)

### 제1항 (피선거권)

1호 4 학기이상 등록을 필하고 평점 2.5 이상인 자.

2호 각 학과 회원 20 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호 집행부 임원, 각 과 학생회 임원, 대의원은 이것을 겸직 할 수 없다.

제2항 선거는 해당학과 전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한다.

제3항(당선) 등록기간 내 등록한 후보 중 각 학과에 소속된 전체 유권자의 60% 이상의 투표율에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독 후보일 때는 60% 이상의 투표율에 총 투표자 수의 60%의 지지 율로 당선이 확정된다.

**제79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총 선거기간 동안 대의원총회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총학생회 선거를 맡아 관리한다.

제80조 (재선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항 당선 해당자가 없을 시.

제2항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무효로 인정하였을 때.

제3항 임무 개시 이전 당선자가 사퇴를 할 경우.

#### 제81조 (보궐선거)

제1항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동시 궐위 시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2항 총학생회장 궐위 시 그 잔임 기간이 150 일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임 기간이 150일 이내일 경우에는 부총학생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항 대의원총회 의장의 궐위 시 그 잔임 기간이 150 일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임 기간이 150 일 이내일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부의장도 궐위 시 상임위원회에서 1 인을 호선한다.

#### 제82조 (불신임 투표)

제1항 총학생회원들의 불신임 요구의 여론이 수렴되어 학생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즉시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 투표의 가부를 묻는다.

제2항 불신임 투표의 결정이 내려지면 5일 이내에 불신임 투표를 시행한다.

제3항 불신임 투표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제4항 불신임 투표를 통한 해임은 유권자 60% 이상의 투표율에 총 투표자 수 2/3 의 찬성이 있을 시집행된다.

**제83조** (선거 규약)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학생자치단체 선거 규약에 따른다.

## 제15장 비상특별위원회

제84조 (직위) 비상특별위원회는 본 회의 임시적인 최고 집행기구이다.

#### 제85조 (구성)

제1항 비상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현 총학생회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비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2항 비상특별위원회의 집행부는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 비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및 각 집행부로 구성된다.

제3항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은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 활동한다.

**제86조** (임기) 비상특별위원회와 비상특별위원장은 본회가 구성된 다음 학기, 새로운 학생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운영되고 활동한다.

## 제87조 (업무 및 권한)

제1항 비상특별위원회는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 집행부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제2항 비상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집행한다.

제3항 비상특별위원장은 대의원총회,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요구 시 출석하여 발언하여야 한다.

제4항 비상특별위원회는 제반 활동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호 사무국: 집행부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진행하며, 행정 및 행사진행을 담당한다.

2호 정책국: 대·내외적인 정책을 집행하며, 총학생회 이하 기관의 시스템 구축 작업을 한다.

3호 홍보국: 대·내외적인 홍보를 기획, 담당한다.

4호 재정국: 경리 및 회계를 담당한다

5호 영성국: 각종 예배와 선교에 관한 대·내외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5항 단 전항 이외의 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발의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추가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6항 비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계획안, 사업보고서, 예산편성과 사업 평가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총회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6장 회칙 개정

제88조 (발의) 회칙 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발의.

제2항 운영위원회의 발의.

제3항 총학생회장의 발의.

제4항 회원 1/10 이상의 발의.

## 제89조 (의결 및 공포)

제1항 회칙 개정 발의 시 대의원총회 의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5 일 이후 14 일 이내에 대의원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학생회장이 이를 3 일 이내에 공포한다.

제2항 전면 회칙 개정 시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2/3 이상의 발의가 있을 시, 발의 이후 5 일 이후 14 일이내에 전체 회원 대상의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율 50% 이상에 총 투표자 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장 보칙

제90조 (자구의 심사) 회칙안의 심사는 대의원총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친다.

# 제18장 부칙

제91조 (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와 함께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